공백 없는 필수의료, 따뜻한 공공의료, 함께 하는 의료원

2025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JEONBUK STATE NAMWON MEDICAL CENTER

2025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의료원 운영 및 경영활동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여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평가하므로서 대내·외 인권리스크 방지 및 인권경영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하여 2025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20조(설치 및 기능) 의료원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과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 1.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 실천 ·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조치 및 제도개선 5. 성희롱 및 고충처리 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 공유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4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의료원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료원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025년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결과보고(’25.09.02.)

Ⅱ 추진개요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5.08.01.~08.29.

○ 평가분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료원 경영활동 전반)

○ 평가방법

- 지표별 현황보고(증빙자료) 기준 서면평가, 현장평가・인터뷰(필요시)
- 지표별 각 부서 담당자 1차 평가 후 인권경영위원회 2차 검증

○ 추진절차 및 경과

절차	평가계획 수립		인권영향 자체평가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평가환류 (방지책 시행)
담당	기획계	⇨	각 소관부서	⇨	기획계	⇨	기획계 및 해당부서
내용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부서별 자체점검 및 평가위원 평가		인권경영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개선 권고과제 이행에 따른 부서별 개선과제 협의

Ⅲ 추진결과

□ 이슈별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96.39점

연번	이슈명	항목 수	지표 문항 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합계	27	86	80		3		3
1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6	18	18				
2	고용상의 비차별	4	14	1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	13	13				
4	강제노동 금지	2	7	5		1		1
5	산업안전 보장	4	14	14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	6	2		2		2
7	소비자 인권 보호	3	9	9				
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2	2				
9	성희롱, 성폭력 예방	1	3	3				

$$\text{평가점수} = 100 \times \frac{(\text{“예” 답변 } 80\times1)+(\text{‘보완필요’ 답변 } 0\text{개}\times0.5)+(\text{‘아니오’ 답변 } 3\text{개}\times0)}{\text{기타 답변을 제외한 이슈별 지표수(총 } 86\text{개- 기타 } 3\text{개)}}$$

□ 인권영향평가 총평

○ 인권영향평가를 자체 실시하였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인권침해 발생부터 조치 및 시정 까지 모든 과정 점검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 실시 결과로 전반적 프로세스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의훈련 실시로 다방면 인권침해요인 예시를 점검할 예정임

○ 2025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업무담당자의 지표 내용의 이해도가 떨어지며 체크리스트를 보완하였으나 의료원 실정에 맞지 않은 지표들이 일부 있어 차기연도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구제절차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의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짐

○ 내부직원에 대한 인권은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협력회사 및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기연도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주요 인권이슈 도출점

분야	항목	인권이슈 선정 내용	담당부서
강제노동의 금지	협력회사에 대한 강제노동 예방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경리계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의료원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경리계
	모니터링 실시	의료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경리계

○ 주요 인권이슈 대응방안

- 주요인권 이슈 발생 분야 : 강제노동의 금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인권이슈 관련 부서 : 경리계
- 주요인권 이슈 대응 계획
  ▸ (기존) 인권침해요인 추가 관리 → (강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징구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2025년도 인권리스크 모의훈련 계획 ---------- 2025년 09월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2025년 09월

- 인권영향평가, 모의훈련 결과 보고 및 '26년도 계획안 상정

○ 평가환류 : 인권이슈 도출점, 취약요인 개선방안 수립·시행

- 주요 인권이슈 대응방안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안건 실시
  ▸ 강제노동의 금지, 책임있는 공급망관리 등 2개 분야
- 기존 담당부서의 징수 동의서 보강을 통한 협력업체 관리 강화

붙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표 1부. 끝.

붙임 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표

평가이슈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소관부서	기획계

분야		지표	담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인권존중 정책선언	1	의료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한다.	기획계	o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 선언문 - 인권경영선언문 홈페이지 게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15조 (인권경영의 선언)
	2	인권정책 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기획계	o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3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획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34조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4	협력업체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기획계	o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8조 (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5	의료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기획계	o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2019.12.1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16조 (이행계획의 수립)
	6	의료원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기획계	o					-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기획계-249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17조 (주관부서의 지정 및 행정적지원)
	7	의료원은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기획계	o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총무계-93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20조(설치및기능), 제27조(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및설립)
	8	협력업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의료원 차원에서 대응한다.	기획계	o					-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획계-254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34조 (인권영향평가의실시)
인권경영 성과	9	의료원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기획계	o					-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획계-254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34조 (인권영향평가의실시)
	10	인권경영 개선 활동 성과를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기획계	o					-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획계-2544)	
	11	보고는 의료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기획계	o					-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획계-2545)	
	12	인권경영 개선 활동에 대한 성과는 객관적이고 적정하다.	기획계	o					-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획계-2546)	
	13	인권경영 개선 활동에 대한 성과는 인권경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친다.	기획계	o					-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획계-254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4장제20조 (설치 및 기능)
	14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획계	o					-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획계-2548)	
구제절차 마련	15	의료원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기획계	o					-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업무처리 지침(기획계-265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13조 (구제조치의 노력)제5장 인권의 구제(제26~33조)
	16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기획계	o					-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업무처리 지침(기획계-2654) - 홈페이지 안내	
	17	피해자가 의료원 구제절차 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협력한다.	기획계	o					-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업무처리 지침(기획계-2654)	
	18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기획계	o					-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업무처리 지침(기획계-2654)	
합 계				18	0	0	0	0		
평가위원 의견		제반 인권경영체계가 적정함.							평가위원 확인(서명) 이 현 성	

평가이슈	고용상의 비차별
소관부서	총무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고용상 비차별	19	의료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관련 법령에 따른 가점부여 등 제외),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직원임용 시험 규칙 제12조(시험위원의 임명) - 별지 제4~6호 서식
	20	의료원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총무계	o						
	21	의료원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제46조(남녀고용평등 등)
	22	의료원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총무계	o						
고용상 남녀 비차별	23	의료원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직원임용 시험규칙 제2장 응시자격 -별지 제4~6호 서식, 채용공고문
	24	의료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제46조(남녀고용평등 등)
	25	의료원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총무계	o						
	26	의료원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총무계	o						
	27	의료원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총무계	o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28	의료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총무계	o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29	비정규직을 이유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총무계	o						
	30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총무계	o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1	의료원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32	의료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총무계	o						
합 계				14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김대인

평가이슈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소관부서	총무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33	의료원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총무계	o						단체협약서
	34	의료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총무계	o						2022년도 단체협약 제16조 (시설 편의 이용)
	35	의료원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총무계	o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제1차~5차 현장교섭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분 금지	36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총무계	o						2022년도 단체협약 제10조 (조합활동의 보장)
	37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총무계	o						2011년도 단체협약서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 해지
	38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총무계	o						
	39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총무계	o						단체협약서
	40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총무계	o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1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총무계	o						2022년도 노사협의회 회의록 (총무계-1287)
	42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총무계	o						2022년도 단체협약 제8조 (자료열람 및 협조) 및 제9조(통지의 의무)
	43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총무계	o						2022년도 단체협약 제32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4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총무계	o						2022년도 임금 미 단체협약 제1차 현장교섭 결과보고
	45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총무계	o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운영
합 계				13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평가이슈	강제노동 금지
소관부서	총무계, 경리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강제노동 금지	46	의료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47	의료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제16조(인사발령 절차) - 근로계약서
	48	의료원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 제32조(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49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 제13조(시업 및 종업)
	50	근로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의료원을 그만 둘 수 있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제50조(퇴직예고)
협력회사에 대한 강제노동 예방	51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총무계					o	해당사항 없음	
	52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경리계			o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보완 (2024.12.31.)	
합 계				5	0	1	0	1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평가이슈	산업안전 보장
소관부서	총무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작업장 안전	53	의료원은 사업장의 시설이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총무계	O						병원 청소 및 소독 점검표 (시설계-1866)
	54	의료원은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총무계	O						소방 방화 점검 일지
	55	사무실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정수기, 세면대, 의자,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총무계	O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서
	56	의료원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실 환경을 측정·관리한다.	총무계	O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	57	의료원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총무계	O					준수사항(해당사례 없음)	
	58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총무계	O						면담일지 및 인사발령 공문
	59	장애인들이 의료원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총무계	O						주차장 환경정비 등 공문
	60	의료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총무계	O						전직원 통신교육 결과보고
	61	의료원은 장애인 법적의무 고용률을 준수한다.	총무계	O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62	의료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총무계	O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
	63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총무계	O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현황북
	64	의료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총무계	O						특수건강진단 결과보고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65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총무계	O						복무규정 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66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총무계	O						
합 계				14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평가이슈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소관부서	총무계, 경리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67	의료원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경리계			O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보완 (2024.12.31.)	
모니터링 실시	68	의료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경리계			O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보완 (2024.12.31.)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69	의료원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총무계	O					법정필수교육 수료	
	70	의료원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총무계	O					법정필수교육 수료 (인권 교육 별도 수료)	법정필수교육 결과보고서
	71	의료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총무계					O		
	72	의료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총무계					O		
합 계				2	0	2	0	2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김기범	

평가이슈	소비자 인권 보호
소관부서	기획계, 원무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73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서비스 정보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획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7조의 2(업무상황등의 공시) 홈페이지 경영공시
	74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한다.	기획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홈페이지 제공 정보
제품결함 시 조치	75	의료원은 서비스 제공 시 과실로 인해 고객이 손실을 당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한다.	원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규정 -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 위원회 지침
소비자 사생활 보호	76	의료원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의료원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기획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규칙 / 지침 / 매뉴얼 1. 개인정보보호 규칙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지침 3. 재해, 재난대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위기대응 매뉴얼 4. 개인정보 암호키관리 매뉴얼 5. 개인정보 외부제공지침 6. 개인정보 유출사고대응 매뉴얼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지침 8. 개인정보처리위탁관리감독지침 9.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게시)
	77	고객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기획계	O						
	78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기획계	O						
	79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기획계	O						
	80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기획계	O						
	81	기관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획계	O					전직원 통신교육 결과보고	
합 계				9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양 은 옥

평가이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소관부서	총무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82	의료원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혐오적 표현, 모욕, 괴롭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성범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83	의료원은 괴롭힘을 당하는 임직원을 위한 보호 및 구제 절차와 지원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총무계	O						
합 계				2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이 영 성

평가이슈	성희롱, 성폭력 예방
소관부서	총무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성희롱, 성폭력 예방	84	의료원은 임직원 대상으로 언어적, 신체적 등 모든 종류의 성범죄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제도 및 정책으로 확립하고 있다.	총무계	O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성범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제8조(예방교육),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85	의료원은 모든 종류의 성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총무계	O						
	86	의료원은 모든 종류의 성범죄 발생 시 임직원을 위한 보호 및 구제 절차와 지원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총무계	O						
합 계				3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박 은 미	

붙임 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2Page 보완사항 추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사업자
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의 배우자가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계약담당자 혹은 계약업체에서 다음 항목과 같이 인권침해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1. 계약자가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경우
2.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에서 계약자의 인권침해 사실이 발각되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